

쉽게 배우는 환경법

1차시. 환경법이란?

1. 환경과 법

1.1 환경문제의 발생

오늘날 세계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는 국내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로 이미 정착되고 있다. 최근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산성비 등은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열대림의 감소나 야생동식물 종의 감소 등의 문제도 세계각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는 그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에도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① 과잉인구에 따른 식량문제와 자원소비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 ② 인구분포와 관련하여 인구폭발 또는 도시화문제, ③ 과잉소비와 낭비적인 소비를 위한 생산확장에 따르는 제반문제, ④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를 무시한 기술의 현명하지 못한 사용문제, ⑤ 환경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법제도상의 불비문제, ⑥ 생태계의 지나친 단순화문제 및 인간의 자기중심적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다.

1.2 환경문제의 특성

환경문제의 특성은 오염행위 최초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잠복성), 훼손원인과 결과발생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장기간성), 복합적 환경오염원인이 존재한다는 점(복합성), 사후 환경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복원도 불완전하다는 점, 국가단위의 대책만으로는 그 효율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1.3 환경법의 출현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선진제국에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개발과 공업화를 서두르게 되었고, 개발도상국은 그들대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절제한 개발우위의 시책을 펴게 되었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공업화에 편승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환경오염내지 환경과피해를 가속화 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처방을 내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공해문제는 생활방해(Nuisance)와 침해(Immission)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적으로 다루어졌고 공해법의 범주를 이룬 것은 위와 같은 생활방해의 법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해문제는 주로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공해법은 자연히 전통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사법적인 권리구제의 법으로서의 위치와 내용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공해법의 구제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유지청구를 주로 한 것이었음은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 2차대전이후에 서구선진국 중심의 개발과 산업화의 촉진으로 말미암아 각국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공해사건들의 발생은 공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결국 행정수단에 의한 오염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공해방지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해공법적인 성질을 띠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해법은 초기단계의 공해 사법적인 내용에서 공해 공법적인 내용의 제정법(Statute)이 부가되어 그 체계가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전제로 하면 종래의 고식적인 공해법에 의한 접근 방법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체계의 법이 요구되었다.

2. 환경법의 의의

2.1 환경법의 개념 및 특성

오늘날 환경법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환경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법 개념의

핵심은 환경이며, 환경의 개념에 대한 정립은 환경법의 내용확정 뿐만 아니라 환경법 이전의 공해법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광의로 환경이라 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 즉 인간환경을 말하며, 인간환경은 형태의 가시성 여부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그 창출의 인공성 여하에 따라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양 분류를 종합하면 인간환경은 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크게 3분할 수 있다.

인간환경에 관한 이와 같은 3분설에 입각하여 환경법의 기본개념인 환경을 정의하며,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환경이 환경 개념 속에 내포된다. 사회적 환경은 정치, 종교, 경제, 기술 등 더나가 정신환경까지도 포함하여 본래취지를 벗어나 범위가 확대된다는 논의가 있으나 항공기 소음, 전파로 인한 집단소송 및 교육여건 조성에 방해가 되는 공사허가 등의 소송제기 등을 미루어 볼 때 환경법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제1호),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며(제2호),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제3호).

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관한 개념 정의를 통하여 환경법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른바 물리적 인공환경)은 포함되고 사회적 환경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환경을 포함시키지 않음은 입법의 미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법은 아직 형성도상의 범영역으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을 띠며, 관련되는 타학문과의 통섭이 불가결하게 요구된다. 또한 환경법은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 관리·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과학기술적 발전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서 부각되면서 국제적 관련성을 갖을 수밖에 없다.

2.2 환경법의 유형

환경법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입법기관으로부터 결정된 헌법,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실정법, 명령, 조례, 규칙 등이 환경법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결정된 환경적 원칙도 포함될 수 있다. 즉, 환경법은 개인, 기업, 정부 및 기타의 공공/개별 법적 주체들의 행동과 활동이 사람이나 자연자원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과 법적 원칙들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환경문제의 특성이 점차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환경법의 적용분야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계획법, 행정법 등과 관련된 공공부문으로부터 오염규제, 부동산 등과 관련된 개인부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환경법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 소관 법률을 포함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여타 분야의 법 및 법적 원칙들도 광의적 관점에서 환경법에 포함될 수 있다.

2.2.1. 환경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민의 환경권 및 환경보전의무에 대한 조항을 둬으로써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환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효력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환경권에는 국가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사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환경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환경권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공해, 폐기물 수거과정이나 소각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침해, 동사무소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음공해 등에 대한 방어권이 그것이다.

(2) 환경침해배제청구권

환경권은 개인 또는 사기업에 의한 환경침해를 막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국가가 규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타인에 대한 국가의 명령·금지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대부분 원인이 국가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 나온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환경침해배제청구권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판례에 의하면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청구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로 보고 있지만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이 하루속히 인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2.2.2 환경행정법

환경행정법이라함은 환경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보호와 환경이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특성을 갖으며, 그 수단으로서 공법적 규제수단을 사용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법적 제재수단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간으로 환경매체별 개별법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크게 규제입법과 지원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환경오염배출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시정명령, 과태료나 벌금 등 제재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후자는 주로 자발적 환경오염배출을 저감하도록 경제적 유인수단을 두고 각종 부담금 면제나 지원금 등의 지원수단을 담고 있다. 환경부 소관의 환경행정법은 2012년 기준 48개에 달한다.

2.2.3. 환경사법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케하는 경우 기존의 민사법에 따른 피해구제조항을 말한다.

2.2.4. 국제환경법

환경에 관한 국가간의 조약이나 국제규범을 말하며, 기후변화협약이나 생물다양성협약 등 현행 한국이 적용받는 국제환경법으로서는 2012년 기준 약 56개에 달한다.

3. 환경법의 연혁

3.1 환경법의 출범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1963년에 제정되었다. 공해방지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3.2 환경법의 발전단계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환경법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맥락을 같이 하여 발전해 왔다. 국가정책의 역점이 경제의 양적 팽창에 있었던 시기에는 환경법 체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그 영향력도 크지 않았었던 데 반해, 환경문제가 복잡화·다양화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서 환경부 소관 환경법만도 48개 법률(2012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법이 다루거나 포괄하고 있는 내용적 범위 또한 넓어졌다. 역사적으로 분수령이 되었던 주요 환경법이나 환경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환경법의 발전단계를 나누어 본다면 크게 공해방지법 시대, 환경보전법 시대,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오염총량관리 및 통합환경관리 시대 등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경제개발 계획단계 및 환경행정의 발전사와 연계하여 각 시기별 주요 환경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공해방지법 시대 (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법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 기간으로서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간 사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역점을 두던 시기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공해방지법은 공해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을 때 제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소극적인 공해 규제만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 특히, 공해방지법은 전문 21개조로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진동 규제와 관련된 간소한 법률로서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전담기관, 예산조치 등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해방지법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공해방지법에 의한 공해방지는 공해방지 조치의 기준이 될

공해안전기준을 정한 다음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공해방지조치를 명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를 명하는 정도의 것으로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다. 동법의 시행규칙은 4여년이 지난 1969년 7월에야 제정되어 사실상 그 이전의 공해방지법은 사장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최초의 환경법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다른 한가지의 문제는 환경행정적 측면에 있다. 즉, 당시의 환경법은 전반적인 환경문제의 사안을 포괄하지 못하고 소극적 공해규제 및 보건위생에만 국한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독립적인 환경전담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위생업무의 일환으로 활용·관리되었다.¹⁾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제2차(1967~1971) 및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6)이 시행되던 시기로서 선진적 공업화와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시도되었다. 특히 중화학 공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에 따른 환경문제도 점차 다양화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이 대폭 수정·강화되었으며,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던 1970년대에 와서는 오물청소법, 하수도법 등 생활의 질적향상이 비교적 감안되기는 하였지만 그나마도 주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국한되었으며, 환경문제는 여전히 보건위생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정도였다. 「공해방지법」 이외에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환경법으로는 「독물및 극물에 관한 법」, 「오물청소법」, 「하수도법」, 「수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로서 주로 오염규제 및 오염매체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환경보전법 시대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이 시기는 제4차 경제개발계획(1977-1981)이 시행되던 기간으로서 자력성장구조의 실현과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을 목표로 산업구조개편과 국제경쟁력 제고,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새마을사업의 확대 등과 더불어 생활환경의 개선 등이 주요 정책과제였다.

이 시기에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환경문제는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보다 광역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어 소극적 공해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해방지법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1977년에 공해방지법을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환경법체 체계의 한 단계 발전을 기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은 총11장 70조에 이르는 법률로서 종전의 공해방지법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법률이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과피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토양 및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제도, 환경분쟁조정 등 법률내용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사업, 환경보전장기계획 수립,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활동, 시민·민간단체 환경보전운동 지원, 환경교육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다양한 환경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공해방지법 폐지와 환경보전법 제정의 의의는 환경문제에 대한 미시적 견해를 거시적 안목으로 전환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환경정책의 특성이 종래의 공해방지적 성격으로부터 환경보전적 성격으로 발전되었다는 점과 그 대응에 있어 미온적·소극적 처방으로부터 종합적·적극적 입장으로 변화하였다는 것도 환경법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실제로, 공업화로 인한 환경문제 관리를 위하여 1967년 2월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가 신설되었으며, 1970년에 공해담당관이 배치되었고 1973년 위생국이 설치되어 공해과가 신설됨. 이후 1975년 공해과는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로 분리되게 됨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헌법상 환경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자 1980년 헌법에 쾌적한 환경에 살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 조항을 삽입되었다. 환경행정적 측면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었는데,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환경청이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발족되었고, 환경청 산하에 6개소의 지방측정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11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위생과가 설치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책이 경제정책의 굴레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제5차 경제개발계획(1982-1986)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때로 환경청 주도로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향권별 환경관리 기반의 확립,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술감리단의 설치·운영, 배출부과금제도, 환경오염방지금의 조성, 선박·해양오염방지기준의 강화, 폐기물관리의 일원화 등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 및 법령 정비,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환경보전법」 이외에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환경법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등이 있다.

(3)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1990년대 초반 ~ 1990년대 후반)

1990년에는 환경청의 발족과 함께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여러 개의 환경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개별대책법 시대를 열게 되었다. 당시는 제6차 경제개발계획(1987-1991)이 마무리되는 시기로서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훨씬 심각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환경보전법이라는 단일법으로는 오염매체별 규제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제로 이행되게 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한 환경법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이면서, 동시에 환경정책, 분야별 환경법령 및 환경행정 전반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토대이다. 이는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으로서 다른 환경법들의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헌법상의 환경권을 재규정하고 제2조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초를 이룰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동시에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무를 규정하여 이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폐기물예치금제도와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 법적 기반이 되었다.

이외에도 1990년대에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에는 환경관련 법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으며, 기존 법률의 정비·보완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환경법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 및 재원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등이 있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법」,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환경관리공단법」 등의 법률도 추가로 제정되었다. 환경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1991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종래의 1관리관(기획관리관), 4개국(환경정책국,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 폐기물관리국), 15개과에서 2실, 4개국, 24개과로 확대되었다. 특히, 지구환경문제가 부각되고 환경이슈의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지구환경과, 폐기물재활용과, 토양보전과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환경관련 분쟁의 소송·중재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환경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환경공무원교육원 등의 기구도 신설되었다. 종래 6개 지역에 설치되었던 환경지청은 지방환경청으로 조직이 확대·보강되었으며, 추가로 5개 지역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4) 지속가능발전의 기틀마련(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후변화문제를 둘러싼 지구생태계 및 인류 생존의 위기감이 세계적으로 팽배해졌다. 환경보전은 경제·사회 체계의 소극적 투입요소가 아닌 필수적 동력원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국가 경영 이념 및 발전 전략은 경제성장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보다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환경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관련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환경문제가 전통적인 환경의 대상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특히 지역이나 국가별 경계와 같은 공간적 개념과 과거에서 미래까지를 넘나드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여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더욱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대기질,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매체 관리에 있어서는 국부적이고 지역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는 권역, 즉 유역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총량관리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국토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환경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명령과 통제방식의 규제에서 피규제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이 확대되고,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수질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시작으로 기존의 개별법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을 기반으로 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오염물질에 대한 사후처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질오염원으로 비점오염원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원의 포괄적 관리를 통한 물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또한 기존의 수질 중심에서 수질과 수생태계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명칭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다.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2000년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3년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폐기물 문제는 주로 폐기물량의 증가로 인한 해결방안으로서의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시기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은 이러한 시설설치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04년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친환경

경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07년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자연생태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별 생물종의 보호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것으로부터 생물종의 서식공간이나 토양환경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생물서식지에 대해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법률은 2003년 제정된 백두대간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2004년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67년 제정되었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2005년 2월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악취방지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보건법」, 「환경교육진흥법」 등도 제정되어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2012년 현재 총48개에 이르렀다.

한편 환경문제가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면서 환경부 외 타 부처에서도 환경관련법을 다루게 되었다. 2012년 현재 환경 또는 환경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부 외 타부처 소관법률은 70여개 이상으로, 관련 부처만도 15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관련 규정이 여러 부처의 법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각부처 간의 정책방향이 상이하여 상호 모순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홍균, 2010, 환경법, 홍문사
- 이순자, 2012, 환경법, 법원사
- 박균성, 함태성, 2012, 환경법, 박영사
- David Wilkinson, 2002, Environment and Law, routledge